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유 기 호

석탄광업에서의 진폐환자 급증, 형광등과 온도계 제조공장에서의 수은 중독, 도금공장의 크롬 중독, 레이온 제조공장에서의 이황화탄소 중독 등의 직업병이 한꺼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도가 들끓은 것도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이로 인하여 1991년도에 정부에서는 건강진단제도의 내실화,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 직업병 판정의 합리화, 전문인력 확보, 의료 및 측정 장비의 현대화 등을 바탕으로 한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일본 국제기술협력단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한 · 일 협력사업"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업무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

그때만하더라도 진폐 예방, 난청 예방, 중독성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을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사업에는 손쓸 틈이 없었다. 특히 개인이 지니고 있는 건강잠재력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 표현도 어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직업병 예방에 총력을 다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따가운 눈총도 있었다.

그러한 여건에서도 19991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의 자문과 선진 외국의 자료를 참고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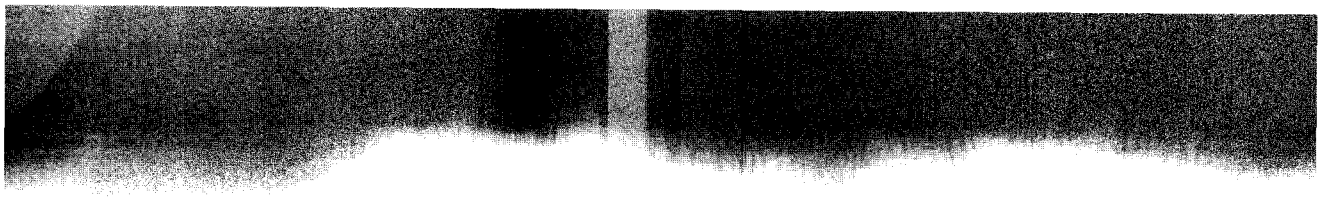

건강증진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1993년도에는 공단 산업보건부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건강증진 기법을 보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강증진의 필요성과 활동방안을 소개하고 시범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사업주의 관심과 지원 의지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이 기초로 만들어 놓은 건강증진모델을 토대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 공표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건강검진,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요원과 시설을 확보토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그때 필자는 산업보건지도국의 건강증진부장 직무를 맡아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었기에 1995년은 가장 아쉬움을 많이 남긴 한 해이기도 하다.

그 이후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적 조항은 1996년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1997년에 시행규칙 제3조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의 보급 ·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8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을 노동부 예규로 제정되었고 1999년에 노동부 고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고시에는 사업장의 건강증진운동 추진체계와 참여방법, 지원 및 혜택, 추진기법 보급 및 지도자 양성, 평가 및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던 건강증진사업을 2003년도에 시행령 제3조의 6으로 격상시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에 힘입어 1996년에는 산업안전교육원의 전문화 과정에 건강증진과정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 1997년도부터 본격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본부와 지도원에 보건, 운동, 영양, 심리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동처방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밀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초 체

력측정 장비 대여, 직장체조 보급, 금연사업 운영, 기술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매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또한 2001년부터 3년간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업보건, 산업간호, 영양관리, 운동처방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직접 채용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건강진단 결과의 사후조치, 건강상담, 체지방 측정 등의 간이검사, 영양 개선,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품과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술자료 등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관리상의 문제로 한시적인 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 인력충원과 사업예산 증액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원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고자 전 보건복지부 사업담당자와 매년 사업의 타당성 설명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드디어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반월산업단지 내에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거울삼아 모든 산업보건 전문 관련기관에서도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예방은 물론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되기를 기원해 본다.